

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“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”를 “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”로 확대·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(안 제68조 등).

II. 검토의견

1. 특별회계의 명칭 수정 및 다른 법률의 개정 등(안 제68조 등)

- 개정안 제68조는 “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”의 명칭을 “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”로 변경하고 있는데, 법률의 제명 및 띄어쓰기를 고려한 특별회계 명칭 개정사례¹⁾를 고려하여 특별회계의 명칭을 “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”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
- 또한,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 제68조를 인용하고 있는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

1)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[시행 2014.1.1.] [법률 제12154호, 2014.1.1., 일부개정]

조치법」 제28조제1호 중 “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”를
 “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”로
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²⁾

- 그 밖에 “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”에 대한 약칭³⁾을
 반영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
 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개 정 안	검 토 의 건
제68조(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)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	제68조(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의 설치) 기본계획 ----- ----- ----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-----.
부 칙	부 칙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8조(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)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·운영 지원, 기업성장지원,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.

1.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68조에 따른 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
 2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
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

개 정 안	검 토 의 건
	제28조제1호 중 “소재·부품·장비경 쟁력강화특별회계”를 “소재·부품·장 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 화 특별회계”로 한다.

(전문위원 박 동 찬)

-
- 3)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(소재·부품·장비
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·부
품·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,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
강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